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이 성 상*

목 차

- I. 서론
- II. 기술사업화 기업의 발전과정 및 현황
- III. 기술사업화 기업 설립 관련 제도의 비교분석과 개선방안
 - 1.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주체
 - 2.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공공기술의 출자와 기술이전
- IV. 기술사업화 기업 운영 관련 제도의 비교분석과 개선방안
 - 1.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회사에 대한 지원
 - 2.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회수
- V. 결론

* 목원대학교 기술마케팅학과 조교수.

초록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 사업화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술사업화 기업의 근거 법률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추진 지원 및 성과 제고, 제도 간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단 등을 포함하여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3과 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기술사업화 기업에 보유기술을 이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사업화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와 같이 기술이전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사업화 기업이 기술 사용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지주회사 등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기술사업화 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투자회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해당 법률에 투자회수 절차, 방법, 투자 수익 사용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자회사, 출자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

I. 서론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 간접적으로 활용한 기술창업 활성화는 산업 구조 쇠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형 기업을 지역사회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이전·양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창업 성과¹⁾가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2004년을 정점으로 교수, 연구원의 창업활동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²⁾

이에 따라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하거나 출자 등을 통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술사업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기술창업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되었다. 특히 경제 및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써 기업가정신이 강조되면서 대학, 공공연구기관에서도 기술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보다 주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³⁾ 이러한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이하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는 2005년 7월에 연구소기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1) 미국 AUTM(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의 조사(U.S. Licensing Activity Survey: FY2013)에 따르면 2013년에 미국 대학, 연구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798건의 신규 창업이 이루어졌음. 반면에 2013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대학, 공공연구기관에서 이전·양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술창업 건수는 187건으로 미국의 2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187건 중 연구재(실험실 창업 등) 및 기관의 직접 창업을 제외하면 대학, 공공연구기관에서 이전·양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은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 전체 벤처기업에서 교수 및 연구원 벤처기업의 비중은 2004년 39.5%였으나 2011년에는 8.55%까지 감소하는 등 교수 및 연구원 창업이 크게 위축되었음(이윤준 외, 기업이 정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2012-11,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58면).

3) 이성상, “연구자의 창업의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효과”,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1호(2014.2), 69면.

시작되었다. 이후 신기술창업전문회사(2007년 8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2008년 2월),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2010년 7월) 제도가 각각 도입되었다. 각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는 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목적으로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기업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목적이 동일하지만 설립 주체, 설립 요건, 지원 내용 등 세부 규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반면에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의 근거 규정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점과 미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추진 지원 및 성과 제고라는 측면에서 제도 간 조화 또는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유형), 기술사업화 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와 기술이전 방식,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지원,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회수를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 간 조화 또는 보완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기술사업화 기업의 발전 과정 및 현황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과 관련된 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기술사업화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Ⅱ. 기술사업화 기업의 발전과정 및 현황

본 연구에서 기술사업화 기업은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지분 인수 등을 통해 편입한 회사이면서 동시에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출자 등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주식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표 1>과 같이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등이 일정 비율(10%~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를 기술사업화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 기업은 Clarysse et al.(2005), Klofsten and Jones-Evans(2000) 등이 정의한 것과 같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나 직원이 해당 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창업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 및 연구 성과를 라이선싱 등을 통해 이전받아 설립된 창업기업인 연구기반 스피노프(research-based spin-offs)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또는 기술지주회사 등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일반적인 연구기반 스피노프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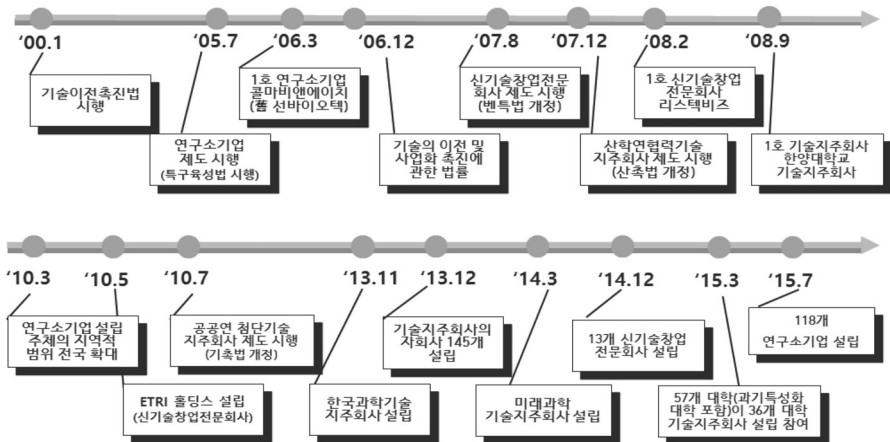
<표 1>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의 유형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근거 규정	연구 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	벤처 기업 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 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도 시행	2005년 7월	2007년 8월	2008년 2월	2010년 7월
설립 목적 (주요 업무)	공공연구기관의 기 술을 직접 사업화	대학이나 연구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 를 통한 창업 촉진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기술의 사 업화	공공연구기관이 보 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 업화
주식 (지분) 보유 요건	설립 주체가 20% 이상의 연구소기 업 주식(지분 포 함) 보유	설립주체가 전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	기술 지 주 회 사 가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보유 *설립주체가 기술지 주회사 자본금의 30%를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 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 여 보유	기술지주회사가 2 년 동안 출자회사 주식의 20% 이상 보유 *설립 주체가 기술지 주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

제3의 역할(third stream mission),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 기업가정신(academic entrepreneurship) 등으로 표현되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3월에 선바이오텍(現 콜마비앤에이치)이 제1호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이후에 2015년 7월까지 118개의 연구소기업이 설립되었다. 또한 2008년 9월에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제1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로 설립된 이후 2015년 3월까지 35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53개로 증가하였다.⁵⁾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145개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2008년 2월에 리스텍비즈가 제1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설립된 이후 13개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2014년 말 기준)가 설립되었다. 반면에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로 설립된 사례는 현재 없다.

〈그림 1〉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의 발전 과정



4) 이성상, 전게서, 70면.

5) 35개 기술지주회사 중 지역 대학이 연합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는 강원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회사가 있으며, 각각 5개, 5개, 1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설립되었지만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기특성화대학이 설립한 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할 경우 대학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는 36개, 참여(주주) 대학은 57개임.

기술사업화 기업이 증가하면서 매출액, 고용 창출, 투자회수 등의 경제적 성과 창출도 늘어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연구소기업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연구소기업의 총 매출액은 2365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2.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850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투자회수 부분에서도 2개 연구소기업이 출자지분 매각으로 출자금 대비 4.3배의 수익을 실현하였으며, 2015년에 코스닥에 등록된 콜마비앤에이치(舊 선바이오텍)의 경우 기술을 출자한 연구기관이 1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분 매각 시 약 2000억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 2개 연구소기업에서 배당금 수익도 4.8억 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출자금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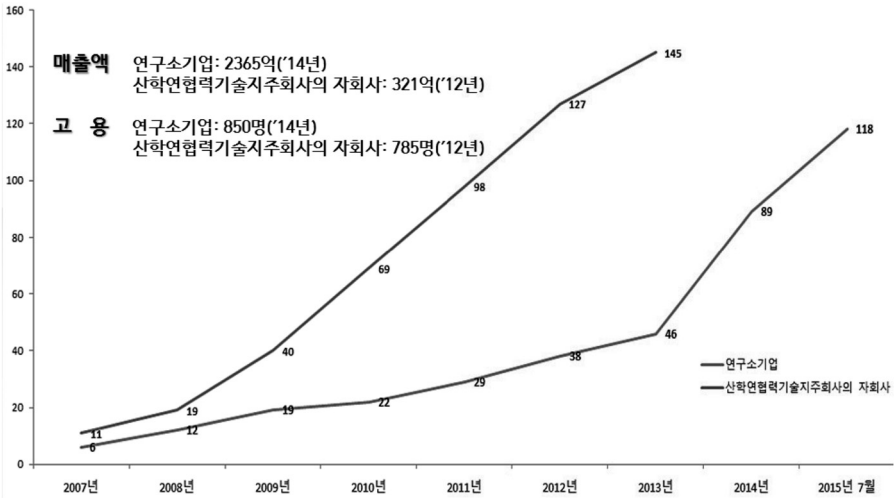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는 2012년 조사에서 응답한 53개 자회사의 매출액이 321억 원으로 연평균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8개 자회사의 고용인원은 785명으로 나타났다.⁷⁾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설립된 에트리홀딩스(2010년 5월 설립),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2013년 11월 설립), 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2014년 3월 설립)는 2015년 6월 현재까지 총 37개의 자회사 설립 및 출자를 진행하여 고용창출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 현황 자료, <<https://www.innopolis.or.kr/sub0303>>, 검색일: 2015. 7. 3.

7)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08-201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성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협의회, 2013, 17면(신성호·장기술, “성과배분측면에서 검토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4호(2014.12), 173면에서 재인용).

〈그림 2〉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건수(누적)와 성과



註: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건수는 손수정 외, “기술지주회사의 가치와 성공조건”, STEPI INSIGHT, 146호(2014), 10면을 바탕으로 재작성.

Ⅲ. 기술사업화 기업 설립 관련 제도의 비교분석과 개선방안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는 모두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 사업화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기술사업화 기업의 주요 업무나 설립 주체의 주식 보유 요건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본 장에서는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유형)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공공기술의 출자(이전) 방식을 중심으로 각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과 관련된 제도를 비교분석해 보고,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추진 및 성과 제고라는 측면에서 제도 간 조화 또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주체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의 근거 규정이 되고 있는 각 법률에 따라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또는 유형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등으로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공립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와 차이가 있다.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도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0은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기술지주회사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직접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현재까지 설립된 118개 연구소기업 중 학교법인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사례는 1개에 불과할 정도로 학교법인이 직접 연구소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데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 물론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공공연구기관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한 대학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된다.

또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다른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와 달리 공립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연구소기업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구소기업을 설립 할 수 있는 기관이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2009년 12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특구 안의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립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설립 주체의 지역적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공립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표 2〉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주체로써 산학협력단과 공립연구기관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대학의 산학 협력단	제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포함)	포함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대학)	포함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학교 법인도 가능)	제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포함)
공립 연구 기관	제외 (국립연구기관만 포함)	포함 (국공립연구기관)	포함 (국공립연구기관)	포함 (국공립연구기관)

따라서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연구소기업의 경우 다른 기술사업화 기업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사업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과 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다른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와와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기관의 범위 또는 유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1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포함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학도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지 않은 대학의 경우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교 법인이 직접 설립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8개 연구소기업 중 학교법인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사례는 1개에 불과할 정도로 학교법인이 직접 연구소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 및 육성방안(2015년 7월)”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학협력단 등을 포함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2.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공공기술의 출자와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목적은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사업화 기업으로의 기술출자 또는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기술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내용은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⁸⁾

기술출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기술사업화 활동을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은 밀접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기술출자는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요건은 아니다. 즉, 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지주회사 등이 기술이 아닌 현금과 같은 양도 가능한 다른 자산을 출자하여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를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대학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 현금 출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2009년 1월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공공연구기관 등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할 수 있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는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뿐만 아니라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자산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경우에도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자본금의 30%를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는 기술지주회사가 기술의 현물출자 없이 2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확보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할 때 기술출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술사업화 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8) 연구소기업 제도를 규정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다른 법률과 달리 기술의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별도로 없지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을 준용하여 기술출자를 위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 목적도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라는 것은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를 규정한 모든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출자 또는 기술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현금 출자만을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출자 등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주식 포함)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기술사업화 기업 설립 요건은 충족할 수 있지만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3과 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기술사업화 기업에 보유기술을 이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⁹⁾

더불어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사업화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기술이전과 관련된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사업화 기업이 기술 사용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를 제외하고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사업화 기업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공공기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 중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의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및 제5항¹⁰⁾에 따라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시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5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3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때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할 수 있으며,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과 제5항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3〉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출자 및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기술 출자	설립 요건 아님	설립 요건 아님 (2009년 1월 개정)	설립 요건 아님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는 적용)	설립 요건 아님
현금 출자만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규정 없음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 하여 전문회사를 설립 할 경우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해야 함	해당 규정 없음	해당 규정 없음
기술 이전	해당 규정 없음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	해당 규정 없음	해당 규정 없음

기술사업화 기업이 단순한 기술 실시권자에 머무르는 경우 출자 또는 이전된 기술의 침해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통상실시권은 본질적으로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의한 실시를 단순히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3자의 실시를 허용하지 않거나 제3자의 실시를 방지하기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3자가 무단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더라도 그것이 실시권자의 실시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 한 실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무단실시자에 대해서 직접 금지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¹¹⁾ 따라서 기술사업화 기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과정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사업화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기술이전의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사업화 기업이 기술 사용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 박재현, “전용실시권과 미국법상 Exclusive License의 비교”, 저스티스, 통권 제120호(2010.12), 61-62면.

Ⅳ. 기술사업화 기업 운영 관련 제도의 비교분석과 개선방안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과 관련된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술사업화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각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 간에 차이가 있거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운영 지원과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회수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비교·분석해 보고,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추진 및 성과 제고라는 측면에서 제도 간 조화 또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회사에 대한 지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 간접적으로 활용한 기술창업 활성화는 산업 구조 쇄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사업화에 대해 다양한 제도적, 물적 지원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표 4〉는 기술사업화 기업의 근거 규정이 되고 있는 각 법률에 제시된 기술사업화 기업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에서 나타나듯이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의 지원,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과 같은 공통적인 지원 내용뿐만 아니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 감면, 국유·공유재산을 연구소기업에 사용, 수익, 대부, 매각 시의 특례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경우에도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자금의 우선지원 등의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공공연구기관 첨단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의 경우에는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의 지원과 같은 포괄적이고 공통적인 지원을 제외하고, 출자회사의 특성에 맞는 지원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규정이

존재하지만 자회사에 대한 지원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 4〉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공통	-인력, 설비 및 비용 지원 12)			
	-휴직 및 겸직 허용 13)			첨단기술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겸직 허용, 출자회사의 경우에는 휴직 및 겸직 허용에 대한 규정 없음
기술 사업화 기업 지원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 14) -법인세 등의 감면 15) -국유, 공유재산의 사용, 매각 16)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17)	-우선적 신용보증 실시 18) -기금의 우선지원 19)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0)	-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의5호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로 수정 필요

- 13)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5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표 4〉와 같이 각 법률에 규정된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사업화 기업의 목적이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 법률에서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이라는 목적에만 국한되는 것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7 ①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1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6.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4 중소기업창업 및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기술사업화 기업과 달리 연구소기업은 설립 요건으로써 연구개발 특구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이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소기업과 함께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여 있는 첨단기술기업²¹⁾에 대해서도 연구소기업과 거의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이 각 기술사업화 기업의 특성이나 설립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상 부여되는 혜택의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의 경우에는 기술사업화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도적 지원이 다른 기술사업화 기업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 간 조화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회사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성상 등(2012)이 공공연구기관별 특허 다(多)등록 연구자 및 기술이전 실적 상위 연구자 39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4개 기관의 200명 응답, 응답률 51.3%)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자들은 기술사업화 기업의 경영참여 또는 기술 및 인력 지원 강화를 위해 겸직의 제도적 보장(49.5%)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휴직기간의 제도적 보장(32.5%) 필요성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²²⁾ 대학, 연구기관이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하고 기업의 경영(기술사업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 기술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암묵적 지식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기술사업화 기업의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자의 휴직 및 겸직 허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와 그 출자회사의 경우에도 연구개발자들의 기술사업화

21)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22) 이성상 외,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 및 성장 촉진 방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2, 53면.

기업 경영참여나 기술 지원 강화를 위해서 휴직 및 겸직 허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2.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회수

지난 10년간 기술사업화 기업이 설립되어 운영이 되면서 지분매각, 인수합병, 기업공개가 이루어진 기술사업화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기술사업화 기업의 매출 증대에 따라 향후에는 지분매각, 인수합병, 기업공개 등을 통해 투자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사업화 기업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회수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 각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는 공통적으로 투자회수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대학, 연구기관에서도 투자회수 시점, 방법, 수익 사용 등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대부분 부족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실무상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회수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술이전 시 기술료를 기업의 주식(지분)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미국 대학들은 보유하게 된 기업의 주식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한 자체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²³⁾ 각 대학의 규정에서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내용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즉시 매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의 상한이 존재하고, 주식의 관리 및 처분을 담당할 책임조직 또는 책임자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식의 매각에 따른 수익배분은 대학의 기술이전 수익 배분 방식과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5〉는 각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와 관련된 규정을 비교하고 있는데 투자회수 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또한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달리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로부터의 수익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연구소기업과

23) 박종복, "공공연구기관의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의 도입 방안", KJET 산업경제(2011. 3), 55면.

〈표 5〉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회수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의 출자회사
투자 수익 유형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과 잉여금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출자수익금에 대한 규정은 없음)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과 잉여금 (출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익금에 대한 규정은 없음)
수익의 사용 용도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연구소기업에 대 한 재출자 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 비 4. 기술개발 및 사업 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5. 기관운영경비	1. 대학이나 연구기 관의 고유목적사업 2. 연구개발 및 산 학협력 활동에 필요 한 경비 3. 해당 전문회사에 대한 재투자 4. 기술개발과 사업 화에 이바지한 인력 과 부서에 대한 보 상금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출자수익 금의 사용 관련 규 정은 없음	출자회사로부터 받 은 배당금·수익금의 사용관련 규정은 없 음
투자회수 절차, 방법	해당 규정 없음	해당 규정 없음	해당 규정 없음	해당 규정 없음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규정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회수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기술사업화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경영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투자회수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기술 지주회사의 경우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대학, 공공연구기관과 달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률에 투자회수 절차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기술지주회사의 경영 및 투자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의 주식(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

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투자회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해당 법률에 투자회수 절차 및 방법, 수익금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의 사용·용도별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에 대한 보상금 지급비율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년 8월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정하여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의 50% 이상을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자회사나 출자회사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수익금을 출자로 발생한 수익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신성호·장기술(2014)은 기술지주회사 제도는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수익이 기술지주회사에 발생하고, 산학협력단은 배당 절차를 통해서 이익을 환수 받아 발명자에게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할 대안으로 법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에 산학협력단을 대신하여 직접 발명자에게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²⁴⁾ 그런데 이러한 보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앞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자회사나 출자회사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수익금을 출자수익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즉,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출자수익금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기술지주회사가 할 것인지 산학협력단이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4) 신성호·장기술, “성과배분측면에서 검토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4호(2014.12), 182-183면.

또한 ‘연구개발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의 제4항의 경우 해석상 배당금도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법률의 규정을 반영하여 배당금을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제3의 역할, 기업가적 대학, 기업가정신 등과 같은 용어들은 조금씩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연구 성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에서도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한 기술사업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²⁵⁾ 이러한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교수, 연구원의 창업활동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기업 설립은 기술이전 성과와 함께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사회적 기여도를 대내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결과물로 활용될 수 있다.²⁶⁾

기술사업화 기업에 포함되는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는 모두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설립 요건으로써 연구개발 특구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는 연구소기업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기술사업화 기업은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 외에 또 다른 목적 또는 제도 도입 배경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기술사업화 기업의 주식(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대학, 공공연구기관과 달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는 상법에

25) 강선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2호(2010.6), 58면.

26) 이성상·김이경·이성기,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 변화와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3호(2012.9), 178면

따른 주식회사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각 기술사업화 기업의 근거 규정이 되는 각 법률에서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술사업화 기업의 특성이나 도입 배경 등의 차이를 감안 하더라도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추진 지원 및 성과 제고, 제도 간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각 법률 조항 간 조화 또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의 근거 규정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기술사업화 기업 설립,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연구소기업의 경우 다른 기술사업화 기업에 비해 제한적이다. 대학과 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다른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기관의 범위에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공립연구기관이 포함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규정상 기술출자는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요건은 아니며,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할 때 기술출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기술사업화 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그 목적도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 사업화라는 것을 고려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3과 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기술사업화 기업에 보유기술을 이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를 제외하고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사업화 기업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사업화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와 같이 기술이전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사업화

기업이 기술 사용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사업화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비교해 보면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비해 산학협력 기술지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에 대한 지원 규정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회사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각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는 공통적으로 투자회수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인 기술지주회사 등의 경우에는 경영 및 투자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기술사업화 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투자회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해당 법률에 투자회수 절차 및 방법, 수익금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08-201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성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13.

손수정 외 2인, 기술지주회사의 가치와 성공조건, STEPI INSIGHT 146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이성상 외 4인,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 및 성장 촉진 방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2.

이윤준 외 8인,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2012-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공공연구기관),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국내 학술지〉

강선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2호(2010.6).

박종복, “공공연구기관의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의 도입 방안”, KIET 산업경제(2011.3).

박재현, “전용실시권과 미국법상 Exclusive License의 비교”, 저스티스, 통권 제120호(2010. 12).

신성호 · 장기술, “성과배분측면에서 검토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4호(2014.12).

이성상, “연구자의 창업의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소기업 설립 · 운영의 효과”,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1호(2014.2).

이성상 · 김이경 · 이성기,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 변화와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3호(2012.9).

〈해외 단행본〉

AUTM, *U.S. Licensing Activity Survey: FY2013*,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2014

〈해외 학술지〉

Clarysse, B., Wright, M., Lockett, A., van de Velde, E. and Vohora, A., “Spinning out new ventures: a typology of incubation strategies from European research institu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0 No.2(2005).

Klofsten, M. and Jones-Evans, D., “Comparing Academic Entrepreneurship in Europe-The Case of Sweden and Ireland”, *Small Business Economics*, Vol.14 No.4(2000).

〈인터넷 자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 현황 자료, 〈<https://www.innopolis.or.kr/sub0303>〉, 검색일: 2015. 7. 3.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Improvement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y owned by Public Research Institut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Seong Sang Lee

Abstrac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y owned by public research institutes such as innopolis start-up and subsidiary company of technology holding company means a company established mainly with the aim of directly commercializing technologies held by public research institut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y system in terms of facilitating business start-up and equitable treatment in related regulation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needs to be incorporated in types of institutions may solely or jointly establish innopolis start-ups. Second, i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establish a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y by investing cash only, it is needed to institutionalize they shall transfer retaining technologies to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y like an article 11-3 of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 Third, it is needed to institutionalize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may grant an exclusive license notwithstanding article 24(4) and (5) of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Fourth, it is needed to draw up measures to support subsidiary company and investment company of technology holding company and institutionalize support system for them. Finally, it is needed to establish basic provisions to help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exit their investments.

Keywords

innopolis start-up, company specializing in new technology start-up, subsidiary company, investment company, technology holding compan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